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7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 박홍근ㆍ기동민ㆍ김성주

김성환 · 김원이 · 김주영

남인순・양기대・양이원영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 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헌법은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 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 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23조제3항).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해의 보상도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건물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재난에 따른 차임 감액 임대인의 지원) ①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의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의 100분의 50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기간의 100분의 30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간의 100분의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차임을 감액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감액한 차임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지급
 - 2.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재난에 따른 차임 감
	액 임대인의 지원) 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의 1
	<u>00분의 50</u>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집합제한 기간의 1
	00분의 3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기간의 100
	<u>분의 30</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차임을 감액한 임대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감액한 차임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지급
- 2.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나. 「은행법」에 따른 인가 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 른 상호저축은행
 - <u>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u>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